

5. 草地法施行令 및 同施行規則中 改正(案) 立法豫告

農林部 公告 第1996-76號 1996. 11. 2

주 요 골 자

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서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대상인 중요산업시설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를 포함함.

개 정 취 지

「경쟁력 10% 이상 높이기」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의 공장용지 부담완화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하는 내용을 초지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.

의 견 제 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(참조 : 축산경영과장, 전화 500-2689/90)에
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주택회보